



제 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 등〉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6611호)

2025.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 등 (안 제29조)	2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 부

나. 제 출 일 : 2024. 12. 17.

다. 회 부 일 : 2024. 1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도록 하던 것을 공동위원장 2명을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 등 (안 제29조)

가. 개정안 요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둠(안 제
29조제1항)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의
체제에서 2명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함(안 29조제2항 등).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위원회) ① 아시아문화중심도 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대통령 소속하에</u> 아시아문화중 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위원회) ① ----- ----- ----- <u>국무</u> <u>총리 소속으로</u>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u>위원장이</u> 필요하다	8. ----- <u>제4항에 따른 조성</u>

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신 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생 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

한다)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⑤ 공동위원장은 각자 조성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성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공동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2호에 따른 공동위원장의 사임 및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지명된 공동위원장 및 새로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제4항제2호에 따른 공동위원장 및 위촉위원은 제6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공동위원장이 지명되거나 후임 위촉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⑧ 조성위원회-----

-----.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⑩ ----- 제9항까지에서 규

정 외에 <u>구성위원회 및 소위원회</u> <u>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u> <u>한 사항</u>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u>정한 사항</u> ----- -- <u>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u> <u>항</u> ----- --.
--	---

다. 검토사항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구성위원회(이하 “구성위원회”라 한다)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구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시아문화
도시법”이라 한다) 제29조¹⁾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아시아문화중

- 1) 「아시아문화도시법」 제2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구성위원회)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구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구성위원회(이하 “구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구성의 기본방향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구성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구성에 필요한 주요 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요재원의 조달 및 추진상황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구성을 위한 관련 부처·부문간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구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구성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외교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국무조정실장·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광주광역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자치단체장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구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④ 구성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성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구성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구성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구성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도시를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임.

- 조성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 비서실의 문화정책 수석비서관이 참여하고,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그 밖에 조성사업의 추진과 관련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²⁾,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를 포함해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 조성위원회는 2022년 8기 위원회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정부 위원회 정비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임.
-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국책사업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임.

2) 「아시아문화도시법 시행령」 제26조(조성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2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대통령비서실의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란 전라남도지사 및 그 밖에 조성사업의 추진과 관련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을 말한다.

- 참고로, 2022년 정부는 부실하게 운영되는 위원회를 폐지하고,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며, 비상설 협의체로 기능 수행이 가능한 위원회는 비상설 협의체로 대체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을 발표·확정³⁾하여, 법률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안⁴⁾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동 일괄개정법률안에는 조성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포함되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21대 국회에서 동일한 취지의 법안에 대한 위원들의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고, 광주시 및 광주문화단체 등의 반대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먼저, 현행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⁵⁾을 갖는데,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며 조성사업 추진 기간이 약 6년 이상 남은 상태인만큼, 조성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향할

3) 2022년 발표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① 1년 이상 구성되지 않은 장기간 미구성 위원회, ② 연평균 본회의 개최 실적이 1회 미만으로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③ 민간위원이 위촉되지 않았거나 2인 이하인 위원회, ④ 설치목적 달성 및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존속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 ⑤ 단순 자문 성격의 위원회를 폐지 대상으로 선정하고, 설치목적·기능·심의대상이 유사한 유사·중복 위원회의 통합을 추진하였음.

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 2022.9.30. 발의, 의안번호 제2117676호

5) 「아시아문화도시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경우 조성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관련하여, 2022년 발의된 일괄개정법률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원회⁶⁾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 추진동력이 약화되거나 부처간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지역적 상징성을 고려하여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동 개정안은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성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하여 다수 부처의 연계 및 협업을 강화하고 위원회를 더 적극적이고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행정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반면, **광주광역시**는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고 조성사업이 동력을 잃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현행대로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광주문화단체는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지위 격하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⁷⁾.

문 의 처

02)6788-5379

6)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22.12.6.) 및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3.3.21.)

7) 연합뉴스, ‘광주 문화단체 “亞문화중심도시 조성위 지위 격하 규탄”’, 2024.8.21.

참 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운영 실적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총 1회)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1	1	1	-	-	-	-
2023년	-	-	-	-	-	-	-
2024년	-	-	-	-	-	-	-

* '22.5월 이후 제9기 조성위원회 미구성으로 회의 개최 실적 없음

[참고 : 최근 3년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회차별 안건]

구 분	일 시	안 건
1차	'22.2.22.	(안건/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제3차 수정(안) 심의의결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2년	468,000	59,000	311,000	98,000	283,000	5,000	270,500	7,500
2023년	461,000	59,000	304,000	98,000	181,000	-	181,000	-
2024년	466,000	59,000	309,000	98,000	121,000	-	121,000	-

* (2032-303)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사업에서 집행